

束草市稅條例中改正條例案

審 查 報 告 書

1995. 5. 30.

내 무 위 원 회

1. 審查經過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5년 4월12일 속초시장

나. 회부일자 : 1995년 4월17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3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95. 5. 30) 상정, 의결

2. 提案說明의 要旨 (제안설명자 : 세무과장 김종옥)

가. 제안이유

'94년도 지방세법및 지방세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속초시세
조례중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개인균등할 주민세 세액 조정 : 1,500원→1,800원(20%인상)
- 법인균등할 주민세 과세기준일 신설 : 지방세법에 정함.
- 조례로 정하여진 주민세및 사업소세 납기를 지방세법에만 둠.
- 중기를 재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 등록세과세대상으로 전환
- 경감대상인 "구관사업 건축물"을 구관사업 부동산으로 확대

3.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 지방세법및 지방세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시세조례중 개정 되어야 할 조항과 그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 본 조례안은 타시군과 통일된 행정업무가 이루어지도록 강원도의 준칙에 의거 작성된 것으로 분야별 개정사항에 대하여는 특이사항이 없다고 사료 됩니다.

4. 質疑 및 答辯要旨

(답변자 : 세무과장 김종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20%로 인상 하므로써 정부에서 10%이하로 억제하고 있는 물가를 상승시킬 소지가 있고 주민들의 세부담이 가중되는데 10%~15%로 하향인상이 가능한지? ○ 주민세가 1,500원으로 인상된 시기는? ○ 주민세가 20%로 인상되므로써 증가되는 시수입은? ○ 구관사업이란 대상이 어떤것인지?	○ 금년 6월 전면 지방자치제가 실시 되므로써 자치단체의 자립도를 제고하기 위한 최소한의 세액이며 국회에서 개정되어 전국적으로 같은 인상율을 적용하므로 하향인상은 불가함. ○ '79. 11. 28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80년도 부터 부과되었음. ○ 약 7,200천원이 추가 징수될것으로 예상됨. ○ 속초시세조례 제49조의 ① 구매, 판매및 그 부속용 토지 ② 보관, 가공, 무역및 그부속 사업용토지 ③ 생산및 검사 사업용 토지 ④ 농어민 교육시설용 토지를 말함.

5. 討論 要旨 : 없 음
6. 修正案 要旨 : 없 음
7. 審査結果 : 原案 可決
8. 少數意見의 要旨 : 없 음
9. 其他 必要한 事項 : 없 음

첨 부 : 속초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끝.

속초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60

제출년월일 : 1995.

제 출 자 : 속 초 시 장

☐ 제안사유

'94년도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시조례중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개인균등할 주민세 세액조정 : 1,500원 → 1,800원(20%인상)
- 법인균등할 주민세 과세기준일 신설 : 지방세법에 정함
- 조례로 정하여진 주민세 및 사업소세 납기를 지방세법에만 둠
- 중기를 재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 등록세 과세대상으로 전환
- 경감대상인 "구관사업 건축물"을 구관사업 부동산으로 확대

☐ 첨 부

- 속초시세조례중개정(안) 1부. 끝.

속초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속초시세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제목 "납기한 연장"을 "천재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으로 하고 동조 제1항중 "특별 징수의무자"가 다음에 "법 제26조의2 및"을 삽입하고 "납부 조는 납입기한"을 "기한"으로 "납기한"을 "기한이 만료되기전"으로 하며 동조 제2항중 "납기한의 연장"을 "기한의 연장"으로 "납기한의 익일부터 3개월 이내의"를 "기한이 만료된 날의 익일부터 3월이내의"로 "그 납부 또는 납입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를 "연장 할 수 있다"라고 하고 동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 한의 연장"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으로 "또 다시 납기한의 연장"을 또다시 기한의 연장"으로 "납기한의 연장기한내에"를 "연장된 기한 내"에로"3개월을" 3월로"납기한 연장할 수 있다"를 "다시 연장 할수 있다"로 하며 동조 제5항중 "납기한"을 신고납부기한"으로 "가산금은 그 연장기간의 만료될때부터 징수한다"를 "가산금은 그 연장기간이 만료된때부터 적용한다"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징수유예신청)"을 "(징수유예등의신청)"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징수유예"을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등을"로 한다.

제15 조제1항제1호중 "1,500원"을 "1,800원"으로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중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세	율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과세기준일 현재의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무소또는 사업소(이하 이조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의 종업원 (법제 243조 제6 호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		50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무소 등의 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		350,000원	

구	분	세	율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소등의 종업원수가 100인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무소 등의 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		20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무소 등의 종업원수가 100인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무소등의 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		100,000원	
기타법인		50,000원	

제16조를 삭제한다

제17조의 제목중 "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를 "비과세적용자"로 하고 동조 본문중 "법 제184조제184조의2및 제184조의3"을 "법 제184조"로하고 재산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를 "재산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자"로 하고 동조 제5호를 삭제한다.

제19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법 제184조의3제2항제7호에서 "구판사업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을 법제266조제3항 및 제4항에서 "구판사업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건축물 및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로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건축물"을 "법 제26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판사업용 건축물"로 하고 "경감율은 100분의 75"를 경감율은 100분의50으로 한다.

제22조중 『"법 제188조제1항제2호제3목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지역"』을 『"법 제188조제1항제2호제(3)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으로 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

제31조중 "법 제202조제1항"을 "법 제9조의2"로 한다.

제32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33조중 "법 제29조 내지 제32조"를 "법 제30조 내지 제32조"로 한다.

제49조중 『"법 제234조의14제2항제6호에서 "구관사업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를 『"법 제266조제3항 및 제4항에서 구관사업용 토지 및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26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관사업용 토지에 대한 경감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50조제2항중 "법 제234조의12내지 제234조의14"를 "법 제234조의12"로, 비과세 또는 감면 받고자"를 "비과세 받고자"로 한다.

제53조의 제목중 "비과세 및 감면적용자"를 "비과세 적용자"로 하고 동조중 "비과세 또는 감면을 받고자"를 "비과세 받고자"로 한다.

제54조제1항중 "법 제238조의2"를 "법 제238조의2, 법 제279조 법 제290조제1항"으로 "비과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으로 한다.

제61조를 삭제한다.

제63조의 제목중 "비과세 및 감면적용자"를 "비과세 적용자"로 하고 "비과세 또는 감면 받고자"를 "비과세 받고자"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신,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납기한의인장) ①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지방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 또는 납입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조의규정에의한 신청서를 납기한 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납기한의인장) ①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지방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 또는 납입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조의규정에의한 신청서를 납기한 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천재등으로인한기한의연장) - - - - -	법 제26조의2 및 지방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 - - - -	기한의 - - - - -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때에는 납기한의 익일부터 납세의무자및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3개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그 납부 또는 납입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때에는 납기한의 익일부터 납세의무자및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3개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그 납부 또는 납입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 - - - -	- 기한이 만료되기 전 - - - - -	- 기한의 - - -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한의 연장을 받는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또다시 납기한의 연장을 받고자할때에는 그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납기한의 연장기한내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그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1회에 한하여 3개월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납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한의 연장을 받는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또다시 납기한의 연장을 받고자할때에는 그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납기한의 연장기한내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그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1회에 한하여 3개월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납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 - - - -	- 기한의 - - - - -	- 기한이 만료된 날의 - - - - -
④ (생략)	④ (생략)	- - - - -	- 3월 - - - - -	- 연장할수 있다. - - - - -
⑤ 납기한의 연장이 결정되었을 경우의 당해 가산금은 그 연장기간의 만료될 부터 징수한다.	⑤ 납기한의 연장이 결정되었을 경우의 당해 가산금은 그 연장기간의 만료될 부터 징수한다.	- - - - -	- 다시 - - - - -	- 기한의 - - - - -
		④ (현행과 같음)	- - - - -	- 연장된 기한내에 - - - - -
		⑤ 신고납부기한의	- - - - -	- 3월 - - - - -
		- 가산금은 그 연장기한이 만료된 때 부터 적용한다.	- - - - -	- 다시 - - - - -

현	행	개	정	안			
제9조(징수유예신청) 시세에 관하여 징수유예를 받고자 하는자는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제15조(세율) ① 균등합의 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개인 : 1,500원 2. 법인		제9조(징수유예등의신청)- - - - -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등을- - - - - - - - - - - 제15조(세율) ① - - - - - - - - - - 1. 개인 : 1,800원 2. 법인					
구	분	세	율	구	분	세	율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대통령령이 정하는 현재 의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 액을 말한다. 이하 이조 에서 같다)100억원을 초 과하는 법인으로서 시내 에 종업원(대통령령이 정하는 종업원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		500,000원		- - - - - - - - - - (과세기준일 현재의 자본금액) - - - - - - - - - - - - - - - - -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무소 또는 사업소 (이하 이조에서 "사무소" 등이라 한다)의 종업원 (법 제243조제6호의 규정 에 의한 종업원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초과 100억원이하 법인으로서 시내에 종업 원수가 100인을 초과하 는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		350,000원		- - - - - - - - - - - - - -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무소등의 종업 원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			

현행		개정안	
구분	세율	구분	세율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시내에 종업원수가 100인 이하인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원초과 50억원이하인 법인으로서 시내에 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	200,000원	- - -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등의 종업원수가 100인 이하인 법인과 - - - - -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등의 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	- - - - -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시내에 종업원수가 100인 이하인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시내에 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	100,000원	- - - - -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무소등의 종업원수가 100인 이하의 법인과 - - - - -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등의 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	- - - - -
기타법인	50,000원	- - - - -	- -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16조 (납기등) ① 주민세균등할의 납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며 소득할은 수시 부과한다.		<삭제>		
② 주민세의 징수는 법 제177조의 규정에 신고납부와 법 제179조의3의 규정에 의한 특별징수방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징수방법에 의한다.				
제17조 (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법 제184조, 제184조의2 및 제18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자는 다음 각호에 계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 기준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비과세 적용자의 신고사항)		법 제1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자는 - -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 - - - -
5. 증기의 명칭 및 종류, 취득연월일, 등록번호, 등록년월일, 용도		5. <삭제>		- - - - -
6. 선박의 선질, 명칭, 정계장, 구조, 용도		5. - - - - -		- - - - -
총톤수 또는 적재량				
7. 항공기의 종류, 이륙중량, 적재능력,		6. - - - - -		- - - - -
항공기의 형식, 용도				
제19조 (구판사업등 건축물에 대한 경감)		제19조 (구판사업등 건축물에 대한 경감)		
① 법 제184조의3제2항제7호에서 "구판사업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① 법 제266조제3항및 제4항에서 구판사업용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건축물 및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이라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건축물에 대한 경감율은 100분의 75로 한다.		② 법 제26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판 사업용 건축물에 대한 경감율은 100분의 50 으로 한다.		
제22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88조제1항제2호 제3목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22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88조제1항제2호 제3목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22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88조제1항제2호제3목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라 - - - - -		
제24조(중기에 대한 신고의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중기의 명칭 및 종류·취득연월일, 등록번호, 등록연월일, 용도, 취득가격·과세사실발생연월일 기타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중기에 대한 신고의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중기의 명칭 및 종류·취득연월일, 등록번호, 등록연월일, 용도, 취득가격·과세사실발생연월일 기타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삭제>		
1. 중기를 취득한때	1. 중기를 취득한때			
2. 중기를 매도하거나 사용할수 없게된 때	2. 중기를 매도하거나 사용할수 없게된 때			
3. 국외에서 사용하던 중기를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때	3. 국외에서 사용하던 중기를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때			
4. 비과세 중기가 중기로 된때	4. 비과세 중기가 중기로 된때			
5. 과세중기가 비과세중기로 된때	5. 과세중기가 비과세중기로 된때			
제31조(천재등으로 인한 감면신청) 법 제20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를 감면받고자하는자는 시행규칙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식에 의하여 그 농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피해년월일, 피해사유등 필요한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피해사실이 발생한날부터 30일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천재등으로 인한 감면신청) 법 제20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를 감면받고자하는자는 시행규칙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식에 의하여 그 농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피해년월일, 피해사유등 필요한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피해사실이 발생한날부터 30일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천재등으로 인한 감면신청) 법 제9조의2의 -		

현	행	개	정	안
제32조 (중군자등의 감면신청) ①영	제155조	<삭제>		
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를 감면 받고자 하는자는 시행규칙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식에 의하여 중군, 동원 또는 전사, 사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없을때에도 감면사유가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감면할수 있다.			
제33조 (감면결정통지)시장은 제29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때에	제33조 (감면결정통지) - - - 제29조내지	제31조의	
는 지체없이 조사, 결정하고 그 결정내용을 시행규칙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서식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		

제49조 (구관사업등 토지에대한경감)법 제234조의14제2항제6호에서 "구관사업등 당	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정하는 사업에	제49조 (구관사업등 토지에대한경감) ①법	제266조제3항및제4항에서 "구관사업용등	
직접 사용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사업		
		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1 ~ 4(생략)		1 ~ 4(현행과 같음)		
② <신설>		② 법 제26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		
		관사업용 토지에 대한 경감율은 100		
		분의 50으로 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50조 (토지에대한 신고의무)①(생략)	제50조 (현행과 같음)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법 제234조의12내지제234조의14의 규정	② 법 제234조의12의 규정에 의하여			
에 의하여 종합토지세를 비과세 또는 감	- - - - - 비과세 - - - -			
면 받고자 하는자는 토지의 소재지, 지번	- - - - -			
지목, 면적, 용도 기타 비과세 또는 감면	- - - - -			
대상 토지임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를 갖	- - - - -			
추어 과세기준일까지 시장에게 제출 하여	- - - - -			
야 한다.	- - - - -			
제53조 (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제53조 (비과세 적용자의 신고사항)			
법 제238의2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세	- - - - -			
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자는 시장	- 비과세 받고자 - - - - -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 - - -			
이 경우 그 신고는 제50조의 규정을 준용	- - - - -			
하되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와 함께 부과	- - - - -			
되는 경우에는 그에관한 신고로 갈음할 수	- - - - -			
있다.	- - - - -			
제54조(공용·공익사업용등의 폐지신고 및	제54조(공용·공익사업용등의 폐지신고			
통지)	및 통지)			
①법 제2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	①법 제238조의2 법 제279조. 법 제			
획세를 비과세 받는자가 도시계획세를 비	290조제1항의 규정에 -비과세 또는감면-			
과세 받을 사유가 없게 되었을때에는 그	- - - - - 비과세 또는 감면 - - - -			
토지 또는 건축물의 사용자는 지체없이 당	- - - - -			
해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제53조의	- - - - -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과 공용 또는 공익사	- - - - -			
업용 폐지의 년월일 및 기타 필요한 사항	- - - - -			
을 관할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61조 (납기) 재산할의 납세의무자는 법 제2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을 매년 7월 1일부터 7월10일까지 시장에게 자진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삭제>		
제63조 (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법 제2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세를 <u>비과세 또는 감면을 받고자 하는자는</u> 다음에 정하는 사항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납기개시일 10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63조 (비과세적용자의 신고사항)	----- ----- 비과세 받고자 ----- ----- ----- -----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신설>		부 칙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일반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